



## 지방재정제도 운영 질의 · 회신

행정자치부 재정과

### 예산운영 관련

- 지방예산계 제공 -

#### 1. 기정예산에 예산과목이 없는 예산전용

##### 【질 의】

○○군에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관광지 1 프로그램사업을 추진하면서 ○○년 본예산에 일반운영비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아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을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일반운영비 →민간경상보조)

그런데 ○○도 재정담당관의 “지방재정실무해설” 책자에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전용은 기정예산 각목 상호간의 전용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목을 신설하여 전용하는 것은 예산의 기초를 파괴할 뿐 아니라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근본 사용목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결과라고 보아야 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정예산액이 없는 목에는 예산전용 할 수 없는지 여부

##### 회 신

- 지방예산은 의회의 승인내용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정예산에 없는 과목에 예산의 전용을 제한하는 도의 재정담당관의 해석한 내용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기정예산에 목이 없는 예산전용에 대하여 종전에는 예산집행의 질서 유지차원에서 전용대상에서 포함하지 않으려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예산집행의 탄력성 확보차원에서 예산과목에 없는 과목의 예산전용도 인정하는 경향입니다.(국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함)
- 따라서 기정예산이 없는 예산과목에도 전용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와 같은 경우 회계장부에 예산과목을 새로 설정해야 하는 문제 등 복잡성도 없지 않으므로 해당자치단체의 예산부서 의견을 존중하여 업무부서간 상호협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2. 의정운영공통경비집행

### 【질 의】

지방의원이 조례 제정을 위해 전문연구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 자료조사비가 필요할 경우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의정공통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경비의 목적이 지방의원의 제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장의 허락을 얻는 등 절차를 걸쳐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 그러나 동경비의 집행에 있어 유념해야 할 사항은
  - 지방의회의원의 사적인 활동과 경비집행의 효과가 개인에게 미치는 경우에는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공통적인 경비이므로 개인에게 월정액 등으로 나누어서 지급할 수 없으며,
  -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분립상 집행부 소관에 속하는 사무처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3. 자치단체보조금 관리

### 【질 의】

-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특산품 개발으로 마(산약)을 이용한 수연국수류 상품화사업입니다.

- 사업자 선정을 위해 사업홍보를 했는데 (신규사업자·기존사업자 등 신청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았음) 기존에 소규모로 수연국수를 제조하고 있는 식품회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 이 사업자에게 보조사업비를 집행해도 되는지?(사업비 100,000천원 중 80,000천원은 보조금 20,000원은 자부담)
- 만약 보조금을 교부해도 된다면 보조금 교부조건에 수익금 발생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을 붙이는 것이 좋을까요?

회 신

- 먼저 보조금 지급대상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 4)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로 지방재정법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보조금의 지급대상의 결정에 있어 해석상 가장 폭이 넓고 또한 판단이 애매한 것은 제4)항이라 하겠으며,
  - 보조금 지급의 해석상 제반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으며
  - 이러한 점 때문에 자치단체는 보조금 지급의 결정 시 스스로 사업을 결정하고 결정한 결과에 대하여 제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 보조금의 지급절차는
  - 지방자치단체 별로 제정 운영하고 있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 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의 보조금 집행결과 정산보고 등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하며
  - 이러한 절차는 조례에 제정되어 있으므로 지급한 보조금의 지도·감독 권한 역시 보조금을 지급한 자치단체의 몫이라 하겠습니다.
- 이러한 점을 감안 할 때
  - 지역특산물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 시 당해 사업이 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권장하는 사무인지 여부, 또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여건인지 여부 등 법적으로 규정된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보조금 지급 이전에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 이러한 검토는 사업의 시행 주체인 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추진하여야 할 사항입니다.(이러한 것을 자치단체의 회계책임이라 함)
- 보조금의 수익발생에 대한 처리 문제도
  - 정형화된 법칙은 없으며, 따라서 보조금을 교부한 자치단체가 보조금 사용에 관한 교부조건으로 일정부분 제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 강사수당 집행

##### 【질 의】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강사수당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가 자율결정 운영하되 경비의 급격한 인상 등 억제를 위해 필요시 다음 기준을 적용” 이라고 되어있고 지급대상별 단가표가 나와 있습니다.
- 여기서 “자율운영”의 범위는?
  - 조례나 규정을 뜻하는지 또는 단체장의 결재도 자율운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교육강사수당 운영과 관련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은
  - 지역여건과 목적에 따라 교육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수당도 이에 부응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는 측면에서입니다.
- 강사수당의 지급에 있어
  - 모든 예산은 회계관계법령에서 정한 처리절차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며, 이를 회계의 책임성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강사수당의 집행과 관련하여 그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여야 하는 등 회계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부가 확일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 실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 자치단체가 강사수당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 이러한 내용을 조례 등을 통하여 마련 할 수도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 그러나 단순히 예산편성지침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면 자치단체의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수당지급액을 결정·지급 할 수도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 5. 국고보조사업 지방비부담액의 예비비 사용요건

### 【질 의】

- ○○시에서는 ○○년도 정보화 지원사업을 지원금 50%, 자부담금50%로 사업비를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선 자부담금(전산개발비)을 정해진 기한 내 확보하여야 하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제반 여건상 제1회 추경작업이 지연되어 기한 내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러한 경우에 자부담금 50%를 예비비로 사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예비비의 운영에 있어 국고보조에 대한 지방비를 부담함에 있어 당초예산에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예비비로 지방비를 확보 할 수는 있습니다.
- 그러나 중요한 것은
  - 국고에서 지원한 사업이 단체 및 주민 등에 대한 보조금사업으로 따라서 세출예산에 보조금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경우 (예 :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 민간자본보조등 보조금 사업)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보조금은 예비비로 지출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고보조사업부담금이라 하여도 보조금이라는 세출예산의 성격상 예비비로 사용이 곤란합니다.

## 6. 출산휴가자 특수업무수행활동비 지급

### 【질 의】

- 출산휴가자의 특수업무수행활동비로 지급이 되는지 여부

### 회 신

-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특수업무 담당분야에 대한 활동비로서
  - 해외연수자, 교육, 훈련입교자, 휴직자, 파견자 등 1개월 이상 그 특수담당분야에 근무하지 않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월중에 걸쳐 출산휴가를 실시하였다면 해당월에 해당하는 기준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7.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에 대하여

### 【질 의】

- 댐 상류지역 정비사업 중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내용은 개별 농가의 축사를 톱밥발효축사로 구조개선 하는 사업과 축산폐수를 저장하여 자체처리할 수 있도록 저장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개별 농가에 이러한 사업을 할 경우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등 어느 예산과목으로 집행을 해야 하는지

### 회 신

- 댐 상류지역 정비사업 중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의 내용은 개별 농가의 축사를 톱밥발효축사로 구조개선 하는 사업과 축산폐수를 저장하여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저장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개별 농가에 이러한 사업을 할 경우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등 어느 예산과목으로 집행을 해야 하는지

## 8. 추경예산성립전 사용

### 【질 의】

-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의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입니다. 법조문 중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사업 외의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군비가 부담되는 일반사업 또는 민간자본이전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만 추경예산 성립 전으로 사용하고 군비는 추경예산 확보 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지방재정법제36조에서는
  -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 상기에서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란 시군구의 경우 시군구비의 부담이 수반되지 않은 사업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사업비 전액이 교부·결정되고 금액이 내시가 이루어진 사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요액 전액이 교부되지 아니한 경비라 하더라도 재해구호 및 복구에 관련된 경비는 사업성격에 따라 성립 전 집행이 가능함)

## 9. 예비비 확보범위

### 【질 의】

-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 등을 편성하면서 예비비가 조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예비비 확보액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만 1.0%를 지키고 추경을 편성할 때에는 당초예산 대비 1.0% 미만이어도 상관없는지?

### 회 신

- 2003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로 계상 하도록 하고 있으며,
-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이상을 확보하되, 그중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4%이상은 대책비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 특히 예비비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에도 공공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예산집행의 탄력적 제도이며,
- 당초 예산편성시 예산규모의 1%이상을 편성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추경 편성시에도 회계년도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일반회계규모의 1% 유지 등 적정규모의 예비비는 확보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0. 출자의 정의와 운영방법

### 【질 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결성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투자 가능 여부와 직접 투자가 불가능할 경우 간접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은?

- 지방재정법 제15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는 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공법인”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단체를 지칭하는 것인?

회신

- 출자의 개념
  - 자치단체가 당해 자치단체가 아닌 법인격을 지닌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재원을 부담하고 부담한 재원이 사라지지 않고 잔존가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부담한 내용에 따라 이를 귀속 받고 해산 시에도 책임을 지는 등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지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념적인 범주에서의 정의입니다.
  - 이러한 출자금은 자치단체가 주민이 납부한 세금등 공금을 공익을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출자에 있어서도 그범위를 제한하여 지방재정법 제15조에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자치단체의 출자의 대상 범위
  -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는 단체
    - 이는 각종 법령에 자치단체가 출자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중소기업투자조합에 자치단체가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어야 출자 할 수 있음.
  -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공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한 공사와 공단을 말함.
  - 3)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외의 단체
    - 여기서 공익법인의 범위를 동 법시행령 제24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기타 공유재산의 조성·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정하고 있음.
    - \* 예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공법인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재해복구 공제사업
  -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 지방공기업법에 정한 수도, 공업용수, 궤도, 자동차운송, 가스 등 사업 등이 해당됨.
- 따라서 상기요건을 감안하여 자치단체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 처리할 사항입니다.

## 회계·계약 운영 관련

- 회계제도팀 제공 -

### 1. 임시일상경비 출납원의 임명가능 여부

#### 【질 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화재 정비분야 공사 등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 관련 전문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있어

- 동 연구기관의 직원을 임시일상경비 출납원으로 임명하여 집행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임시일상경비 출납원 임명은 지방재정법 제11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수행상 필요에 의해 관계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고 동기관의 직원을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음.
- 질의한 건의 경우 사업비 집행과 관련 이미 협약서에 의해 대행사업비로 전문연구기관에 지급하면 동기관이 지출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일시적사무수행상 필요에 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임시일상경비 출납원 임명이 아닌 지체에서 회계관직을 임명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임.

### 2.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액의 이자수입 처리

####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관리조합으로부터 주민지원사업비로 받은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중으로

-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을 동관리조합에 반환하여야 하는지 유무와 반환하여야 한다면 어느 시점에 반환하여야 하는지

회신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의3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는 각종 부담금, 보증금, 예치금,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로 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주민지원사업인 동건의 경우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비 잔액과 이자는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후 지출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세입세출 외 현금 보관기간 중 발생한 이자수입은 재무회계규칙 제85조 이자 반환규정에 따라 사업완료 후 정산시에 반환하여야 할 것임.

### 3.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수입금의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 여부

【질 의】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대금을 기존에는 세입조치하였으나, 민간위탁시에는 동 판매대금을 대행업체에 지급하여야 하는 바

- 동경우에 위탁업체는 스티커 판매대금으로 업체를 운영하여야 하므로 자치단체에서는 월별로 스티커 판매대금 전체를 업체에 지급하여야 함.
- 따라서 대금지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판매대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취급하여 별도로 예산편성 없이 지출할 수 있는 지

회신

- 질의한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대금도 지방재정법 제29조의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동 대금이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3에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로 명시한 부담금, 보증금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동 대금은 세입에 편성 후 세출예산으로 민간위탁기관에 월별로 지급 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동 대금의 지급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입대체경비로 지정 받아 운용할 수 있는 바, 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해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해야 할 것임.

#### 4. 회계관직의 직무대리

#####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회계관계공무원중 분임경리관이 병가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

- 분임경리관직에 대해 직무대리를 지정할 경우 누구를 지정하여야 하는지

##### 회 신

-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행토록 하고 있는 바
  - 분임경리관 직무대리자는 해당기관의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분임경리관이 회계과장인 경우 회계과의 주무담당을 지정 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주무담당이 별도의 회계관직(예 : 지출원)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57조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원칙에 따라 분임경리관과 지출원을 겸직할 수 없는 바
  - 상위법에 의한 회계관직인 지출원의 직무대리요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출원직이 아닌 회계과의 타담당요원을 분임경리관 직무대리자로 지정, 대행하여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사례는 분임경리관외에 경리관 등 타 회계관직에도 적용될 수 있기에 동원칙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 5. 대금지급을 계좌입금이외의 방법으로 처리가능 여부

##### 【질 의】

보상금 등 대금지급에 있어 채주가 계좌입금 대신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수령을 원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 객관적으로 계좌입금이 불가능할 경우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현금지급이 가능한 지

회 신

- 공사대가 등 각종 대금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0조 “지출 및 지급의 원칙” 규정에 의해 10만원 이상의 각종 대금지급에 있어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하지만 채주가 통장을 개설하지 않았거나, 채주의 통장이 온라인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동규칙 제51조제3항에 따라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토록 하고 있는 바,
  - 동규칙 제54조제1항에 의거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 하도록 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인감 등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하여 제출하면 발주기관은 이를 확인후 지급조치하여야 할 것임.

## 6. 세출예산 집행후 집행잔액의 여입여부

### 【질 의】

세출예산에 편성된 민간 경상보조 예산을 집행한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익년도 2월말 까지 반납하여야 할 경우 타당한 처리방법은

- 갑설 : 여입결의를 하여 반납금으로 처리
- 을설 : 세외수입 잠수입에 징수결의하여 입금 조치

회 신

- 잠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 질의한 집행잔액의 경우 세출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잔여액으로 수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갑설과 같이 여입결의를 하여 반납금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 7. 사고이월의 경우 부대경비에 관급자재의 포함여부

### 【질 의】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

이월의 경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 시설공사에서 부대경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곤란이 있으며 특히, 관급자재를 부대경비로 볼수 있는지 여부

회신

- 부대경비는 사고이월이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이월가능한데 비해 특례로 지출원인행위 없이도 이월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부대경비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사고이월시 특례규정으로 사용되는 부대경비는 예산과목상의 시설부대비 등의 예산과목과는 상이한 개념으로
  - 이월되는 사업과의 종속적인 관계에 있어 동사업의 진척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특수한 입장에 있는 사업을 부대경비로 간주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자치단체 청사신축사업에 대한 부대경비로 청사준공식 행사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즉, 청사준공이 완료되어야만 청사준공식 행사경비를 집행할 수 있으므로 본공사에 준공식 행사경비는 종속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임.
- 이와 같이 본공사와 종속적인 관계를 가지는 부대경비는 사고이월에 있어 지출원인행위가 불가능하므로 지출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가능한 것임.
- 또한 관급자재대와 같은 자재대는 일반적인 경우 부대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의 경우 사고이월액 확정시 예산편성액을 기준으로 할 것임.

## 8. 보조사업의 교부결정후 변경가능 여부

### 【질 의】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사업계획서에 의해 해당 건축물 건립을 위해 보조금이 교부결정되었고 당해연도 12월말 이전에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사업의 경우

- 당초 사업계획상 건축물 부지를 변경가능한 지
- 또한 사고이월시에도 매입대상지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사업은 해당 자치단체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집행되는 바,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할 때 매입대상지를 확정하여 요청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후, 동조례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사고이월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을 다음 해로 이월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사정변경에 따른 이월금액의 변경은 불가하나,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 등 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바
  - 매입대상지 변경 건은 이월액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면,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등을 통해 처리가능 할 것임.

## 9.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질 의】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나 당초예산서에는 등재되지 않은 경우 국도비를 송금받을 경우 향후 특별회계 운영 방안은

회 신

-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5조 “회계의 구분” 규정에 의해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가 가능하나
  - 특별회계에 계상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려면 지방재정법 제37조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안이 의결 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성립전 예산집행이 가능하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질의내용과 같이 설계서상 측량비 및 토질조사비가 누락되었다면 설계변경을 통하여 당해 비목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10. 사고이월시 선금지급 처리

### 【질 의】

자치단체 발주사업인 폐기물 처리장 건설사업을 추진중 관내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차질이 빚어져 사업의 연내 완공이 불가능하여 사고이월 처리한 것으로

- 당초 계약체결 직후 계약금액의 일정율을 선금으로 지급한 경우 사고이월을 사유로 당해연도 발주예정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선금지급분은 반드시 반환받아야 하는지 여부
-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러한 경우에 충족될 수 있는 조건은 어떠한지

### 회 신

- 사고이월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 제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고 미지급 금액은 예산이월연도에 지급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한 동건의 경우 초과지급 금액은 동요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야 함.
- 다만, 사고이월된 사업의 경우 항상 당해연도 집행가능금액을 초과하는 선금 지급액에 대해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바, 그 예외조항으로
  - 이월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고, 선금으로 지급받은 전액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선금잔액 및 이자를 회수하지 않아도 될 것임.
  - 하지만, 동건의 경우에도 선금지급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의 정산은 기성 또는 기납이 이루어 질 때마다 정산하여야 할 것임.